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12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김도읍・주진우・조지연

박형수 · 조승환 · 박대출

김형동 • 구자근 • 윤한홍

김장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 •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 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2조(「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제3조(「재해구호법」의 개정) 재해구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제4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의 개정)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피성년후견인
- 제5조(「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격 및 사

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 미성년자

제6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개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제7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총 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피성년후견인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제6조(결격사유)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	
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	
허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	
다.	.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는 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1.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는 피한정후견인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 ②	제16조의2(손해평가인)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사람은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u>2. 피성년후견인</u>
<u>견인</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제7조(결격사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	
조제1항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	
허가(이하 "사격장 설치허가"라	
한다)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ㆍ미성년자
<u>• 미성년자</u>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허가의 제한) 경찰청장이나	제6조(허가의 제한)
시 · 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행	
행위영업의 허가(이하 "영업허	
가"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u>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u>	<u>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u>
또는 피한정후견인	<u>견인</u>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	<u>5. 피성년후견인</u>
<u>인</u>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	
다.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	<u>1. 피성년후견인</u>
<u>인</u>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